



고시·공고·지침

[홈](#) / [법령](#) / [고시·공고·지침](#)

2021년 3/4분기 공익법인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

2021.09.30.

141

119

첨부파일(7)

1. 2021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.hwp 37.5 KB

다운로드 자료열기

2. 지정누계(2021.9.30).xlsx 384.3 KB

다운로드

3.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.hwp 10.5 KB

다운로드 자료열기

4.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.hwp 15.0 KB

다운로드 자료열기

5.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(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).hwp 16.5 KB

다운로드 자료열기

6.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.hwp 12.0 KB

다운로드 자료열기

7.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.hwp 20.5 KB

다운로드 자료열기

전체 다운로드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, 같은 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공익법인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※ 붙임 자료(1. 2021년 3/4분기 공익법인 지정·변경에 대한 고시)는 '행정안전부 전자관보(2021. 9. 30일자)'로도 확인 가능합니다.

붙임 1. 2021년 3/4분기 공익법인 지정·변경에 대한 고시

- 2. 지정누계(2021.9.30. 현재)
- 3.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
- 4.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
- 5.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(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)
- 6.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
- 7.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

※ 2016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법인 인정기간(6년)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※ 3/4분기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·변경한 공익법인, 지정·변경된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를 게재합니다. (이전지정·변경된 공익법인, 지정·변경된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는 별도 고시합니다.)



기획재정부

[정보공개](#)[뉴스](#)[정책](#)[통계](#)[법령](#)[국민참여](#)[기관소개](#)[한눈에 보는 경제](#)

담당부서	법인세제과	연락처	044-215-4228
담당자	이희경	이메일	hkleee71@korea.kr
고시번호	제 2021-28호		

목록보기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☒ 매우만족 ☐ 만족 ☐ 보통 ☐ 불만족 ☐ 매우불만족

* 의견쓰기 :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. (0/60)

평가하기

이용안내

누리집 [개인정보](#) 저작권
이용안내 [보처리](#) 정책
내 [방침](#)
웹 접근 ㄱ~ㅎ 문서보
성 정책 색인 기 내려
받기

오시는길

 (3010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
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
 대표전화: 044-215-2150
 팩스: 044-215-8033

관련 누리집

 정부  어린이
관련
기관  ENGLISH
누리집
 외청 및 유관기관 누리집
 운영 누리집

이 누리집은
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
누리집입니다

